

소송업무규정

제정 2009.10. 1 규정 제 10호
개정 2013. 9.27 규정 제 99호
개정 2017.12. 1 규정 제169호
개정 2018. 5.15 규정 제177호
개정 2018.12.31 규정 제190호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관련한 소송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소송”이란 한국토지주택공사(이하 “공사”라 한다)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민사소송, 형사소송, 행정소송, 비송사건 등과 임직원이 고의 또는 중과실 없이 행한 직무상의 행위로 당사자가 된 민사소송 또는 형사소송(수사기관의 수사가 개시된 경우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을 말한다. 다만, 「주택관리규정 시행세칙」에 따른 명도소송은 제외한다.
2. “소송대리인”이란 공사의 위임을 받아 소송을 수행하는 변호사와 「한국토지주택공사법」 제7조에 따라 선임된 재판상의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, 「민사소송법」에 따라 해당 사건의 소송대리 허가를 받은 직원을 말한다.
3. “소송발생부서장”이란 소송사건 발생의 원인이 되는 업무를 담당하는

부서장(지역본부장 및 사업본부장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을 말한다.

4. “주무부서장”이란 소송발생부서장 중 본사의 부서장을 말한다.

5. “소송총괄부서장”이란 소송의 제기, 응소 등 공사 소송 전반에 대하여 총괄하는 본사 소송부서장을 말한다.

6. “소송비용”이란 소송에서 패소한 당사자가 소송종결 후 법원의 결정에 따라 부담하는 소송수행 중 소요된 비용(착수금, 승소보수금, 인지대, 송달료, 감정료 등)을 말한다.

제3조(적용범위) 소송업무의 처리에 관하여는 관계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이 규정에 따른다. 다만,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.

제2장 소송업무 수행절차

제4조(소송수행) ① 소송은 소송총괄부서장이 수행하며 제7조제1항에 규정된 소송(이하 “소송발생부서 위임소송”이라 한다)에 대해서는 소송발생부서장이 수행한다. <개정 2018. 12. 31.>

② 소송을 수행하는 경우 변호사에게 위임하여 수행하되, 소액사건·단독사건 그 밖에 사건의 성격상 직원이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사건의 경우에는 「한국토지주택공사법」 제7조에 따라 선임된 재판상의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과 「민사소송법」에 따라 해당

사건의 소송대리 허가를 받은 직원이 수행할 수 있다.

③ 변호사에게 소송수행을 위임하는 경우에는 공사의 법률고문 또는 자문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다. 다만, 해당 사건에 관한 전문지식, 소송 수행능력, 사무소 소재지, 사건의 성격과 내용 등을 감안하여 다른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.

④ 변호사에게 소송을 위임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소송위임 계약을 체결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소송위임장을 교부한다. 다만, 소송 위임계약의 내용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상호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.

제5조(제소의뢰) ① 주무부서장은 소관업무 중 소송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업무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소방침(사후대책이 포함되어야 한다. 이하 같다)을 정하여 소송총괄부서장에게 제소를 의뢰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주무부서장은 제소방침을 정하기 전에 미리 소송총괄부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. 단, 소송발생부서 위임소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개정 2018. 12. 31.>

② 지역본부장(사업본부장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이 소송발생부서 위임 소송 외의 소송에 대하여 제소를 의뢰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무부서장에게 제소의뢰 요청을 하여야 하며, 그 요청을 받은 주무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소방침을 정한 후에 제소 의뢰하여야 한다. <개정 2018. 12. 31.>

③ 주무부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송총괄부서장에게 제소 의뢰할 경우 제소기한(민사소송의 경우 소멸시효 등 완성) 30일 전에 의뢰

하여야 한다. <신설 2018. 12. 31.>

제6조(응소) ① 소송에 대한 응소방침은 소송총괄부서장 또는 소송발생부서장이 정한다. <개정 2018. 12. 31.>

② 임직원이 고의 또는 중과실 없이 행한 직무상의 행위로 당사자가 된 민사소송 또는 형사소송이 발생하는 경우 소송발생부서장은 사건경위 및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소송총괄부서장에게 응소 등 대응요청을 할 수 있다. 다만, 소송발생부서 위임소송에 해당되는 경우 소송발생부서장이 수행할 수 있다. <개정 2018. 12. 31.>

③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소송 중 소송총괄부서에서 수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, 소송발생부서장은 제5조를 준용하여 소송총괄부서장에게 응소 의뢰하여야 한다. <신설 2018. 12. 31.>

제7조(소송발생부서 위임소송) ① 다음 각 호의 소송은 소송발생부서장이 수행한다. 다만, 소송총괄부서장이 소송총괄부서에서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개정 2018. 12. 31.>

1. 소유권 이전등기·말소등기 등 등기와 관련된 소송
2. 임대보증금과 관련된 전부금, 추심금, 양수금 청구소송
3. 민사소송 중 소송물가액이 3억원 이하인 소송 <개정 2017. 12. 1.>
4. 보상금 증감에 관한 소송(수용재결처분취소소송 포함), 이주대책대상자 제외처분 취소청구소송 등 이주·생활대책 관련 소송
5. 토지 또는 건물의 인도·철거 등과 관련한 소송

6.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등 확인의 소송

7. 직원이 고의 또는 중과실 없이 행한 직무상의 행위로 당사자가 된 경미한 민사소송 또는 형사소송

8. 하자소송 종결로 인한 후속조치 관련 소송 <신설 2017. 12. 1.>

9. 긴박하거나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소송발생부서에서 수행하는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소송으로서 다음 각 목의 소송

가. 확정판결 등으로 주요 법리 및 사실관계가 정형화된 사건

나. 소송물가액이 제3호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하나 청구원인등이 단순·명료한 사건

다. 제소기한 임박 등으로 소송총괄부서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사건
<2018.12. 31. 개정>

② 소송발생부서장은 위임받은 소송업무를 총괄하며 해당소송 관련 부서장은 소송발생부서장에게 소송수행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.

<2018.12. 31. 개정>

③ 소송발생부서장은 소송발생부서 위임소송의 제소, 응소, 심급별 소송결과 및 소송종결 사항을 지체없이 소송총괄부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<개정 2018. 12. 31.>

제8조(소송고지 및 보전조치) 소송총괄부서장 및 소송발생부서장은 소송의 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이 있는 때에는 소송고지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, 장래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송목적물 또는 채무자의

재산에 대하여 가압류 또는 가처분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 <개정 2018. 12. 31.>

제9조(상소의 제기 등) ① 법원의 판결에 상소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호사의 의견 등을 검토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상소를 제기하여야 한다.

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소를 포기할 수 있다.

1. 대법원 판례 등에 비추어 승소의 가능성이 없는 경우

2. 상소의 이익이 경미한 경우

③ 소의 취하, 화해, 조정, 청구의 포기 또는 인낙, 소송의 탈퇴, 상소의 포기 등 중요한 소송행위를 하려는 경우로서 그 소송물가액이 30억원 이상인 때에는 미리 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단, 경영 전반에 영향을 끼치는 중요소송이 아닌 경우로서 소송발생부서, 소송대리인 등의 의견이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개정 2018. 12. 31.>

제10조(소송협의체 구성) ① 소송총괄부서장은 소송사건의 주요 쟁점사항 등의 검토 및 대응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소송총괄부서장, 주무부서장, 지역본부장, 외부전문가를 포함하는 소송협의체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 다만, 소송발생부서 위임소송의 경우에는 소송발생부서장이 해당 소송 관련 부서장을 구성원으로 하여 소송협의체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 <개정 2018. 12. 31.>

② 하자소송의 경우 소송총괄부서장이 소송사건의 전문성, 난이도, 중대성을 감안하여 기술기준, 주택설계 및 시공품질 등을 담당하는 부서장을 소송

협의체 구성원으로 지정한 때에는 해당부서장은 지체없이 그 운영에 참여하여야 한다. <개정 2017. 12. 1.>

제3장 소송비용

제11조 (소송물가액의 산정) 변호사보수의 산정을 위한 소송물가액은 대법원의 「민사소송 등 인지규칙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다. 다만, 소송의 내용이나 성질을 고려하여 사장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. <개정 2017. 12. 1.>

제12조 (변호사보수 지급방법) 변호사 보수는 착수금과 승소보수금으로 구분하여 지급하되 부가가치세는 따로 지급한다. <개정 2017. 12. 1.>

제13조 (착수금의 산정) ① 변호사 소송위임에 대한 착수금은 소송물가액을 기초로 별표의 착수금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하되 5천만원을 초과하여 산출되는 경우에는 5천만원(소송물가액이 1천억원 초과하는 조세소송으로서 1억원을 초과하여 산출되는 경우에는 1억원)으로 한다. <개정 2018. 12. 31.>

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소송사건 및 비송사건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임변호사와 협의하여 그 보수를 결정할 수 있다. 다만, 아래 각호에 대하여 소송총괄부서장이 정한 별도의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우선 적용한다. <개정 2017. 12. 1.>

1. 비재산권상의 사건 및 재산권상의 청구로서 소송물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사건
2. 소송의 중요도 및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소송물가액을 기초로 산출되는

착수금의 증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건

3. 보상금 증감에 관한 소송을 제외한 행정사건

4.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등에 관한 제소사건

5. 국세청,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법인세 등에 관한 제소사건

6. 형사사건

7. 다수의 지장물 철거 및 대지인도 청구에 관한 사건

8. 헌법소원사건

9. 보상금증감에 관한 소송(수용재결처분 취소소송 포함) <개정 2017. 12. 1.>

10. 공동주택 하자소송 <신설 2018. 12. 31.>

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송의 내용이나 성질 등에 비추어 불가피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장의 승인을 받아 5천만원(소송물가액이 1천억원 초과하는 조세소송 및 공동주택 하자소송은 1억원)을 초과하여 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3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. <개정 2018. 12. 31.>

④ 소송 진행 중 소송물가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그 증액된 정도에 따라 제1항에 따라 재산정한 착수금 범위에서 수임변호사와 협의하여 지급한다. <개정 2017. 12. 1.>

⑤ 상급심의 착수금 기준도 원심 착수금의 산정기준과 같다. 다만, 소송물가액이 증감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개정 2017. 12. 1.>

⑥ 같은 목적물에 대한 재소송 또는 재심사건을 같은 변호사에게 위임하는

경우에는 원심 착수금의 2분의 1 이하로 한다. <개정 2017. 12. 1.>

⑦ 상고심 사건에 있어 공사 상고부분에 대한 파기환송이 있는 경우에는 환송심 착수금으로 상고심 착수금의 2분의 1을 지급한다. 다만, 환송심 착수 시 소송대리인이 변경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개정 2018. 12. 31.>

⑧ 가압류 및 가처분사건의 착수금은 본안소송 착수금의 2분의 1 이하로 하며 본안소송이 없는 경우에는 수임변호사와 협의하여 그 보수를 정할 수 있다. 다만, 공사중지가처분 등 본안소송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사건은 본안소송과 동일하게 착수금을 산정할 수 있다. <개정 2017. 12. 1.>

⑨ 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해제 신청사건, 담보취소 신청사건 및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사건은 착수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. <개정 2017. 12. 1.>

⑩ 강제집행 및 강제집행정지 사건의 착수금은 본안소송 착수금의 4분의 1 이하로 하되 그 금액은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. <개정 2017. 12. 1.>

제13조의2 (승소보수금의 산정) ① 본안소송의 승소보수금은 전부 승소의 경우에 착수금의 1배를 지급하며, 일부 승소의 경우에는 그 승소의 정도, 소송수행의 난이도, 소송결과의 공사에 대한 기여도 등을 참작하여 적정수준 감액하여 지급한다. 다만, 경영상의 중요한 소송은 사장의 승인을 받아 승소보수금을 따로 정할 수 있으며, 이 경우에도 3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. <개정 2017. 12. 1.>

② 상고심 사건에 있어 공사 상고부분 중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파기환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전부 승소로 본다. <개정 2017. 12. 1.>

③ 가압류 및 가처분사건은 변론이나 심문절차를 거치는 경우에 한정하여

승소보수금을 지급할 수 있다. <개정 2017. 12. 1.>

④ 가압류 및 가처분의 해제신청사건, 담보취소 신청사건 및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사건, 강제집행 및 강제집행정지사건의 승소보수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.

<개정 2017. 12. 1.>

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승소보수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. 다만, 해당 사건 변론의 경과, 변론의 성숙도, 변론기간 등을 참작하여 필요한 경우 착수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.

1. 공사가 원고인 경우 피고의 자백 또는 의제자백에 의한 승소의 판결(무변론 판결 포함)이 있는 경우

2. 소의 취하(쌍불취하를 포함한다), 조정, 화해, 청구의 포기 및 인낙, 본안 심리전 각하판결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소송이 종결된 경우

3. 승소율이 50퍼센트에 미달하는 경우

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승소가능성은 낮으나 경영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건으로서, 경영상 법원의 판단(항소, 상고 포함)을 받아볼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변호사와 협의하여, 소송물가액을 기초로 산정된 변호사보수(착수금과 승소보수금의 합계) 중 착수금은 변호사 보수의 1/10 이내로 지급하고, 승소보수금은 변호사보수에서 착수금을 뺀 금액 이내에서 승소의 정도 등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. <신설 2018. 12. 31.>

제14조(위임사건 처리비용 등) ① 인지대, 송달료, 출장여비 등 소송사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은 변호사보수와는 따로 지급한다.

② 제1항의 경우 출장여비는 공사의 1급 직원의 여비에 준하여 산출한다.

③ 변호사보수 등 소송수행에 필요한 비용은 소송대리인의 청구에 따라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소송총괄부서장 또는 소송발생부서장이 지급한다.

<개정 2018. 12. 31.>

제15조(법률자문 보수의 산정) ① 변호사에게 서면으로 법률자문을 한 경우 그 보수는 1건당 300만원 이내에서 자문내용의 난이도, 검토시간 등을 고려하여 소송총괄부서장이 정하는 산정기준에 따라 지급한다. <개정 2017. 12. 1.>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 및 서면 작성에 장시간이 요구되는 경우 변호사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으며, 변호사 외에 해당 전문분야 교수, 관련기관 등에 법률자문을 할 수 있다.

제4장 소송결과에 따른 조치

제16조(소송결과 통보 등) ① 소송총괄부서장은 필요에 따라 주무부서장 및 지역본부장에게 해당 소송의 진행상황을 통보한다.

② 소송총괄부서장은 판결 후 그 판결정본의 사본을 첨부하여 주무부서장 및 지역본부장에게 소송수행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.

③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주무부서장 및 지역본부장은 소송결과에 대한 상소 등의 의견제시, 판결내용에 따른 채무의 이행, 채권의 행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제17조(소송비용 등의 회수 및 지급) ① 소송수행 결과 공사가 승소확정 판결을 받았을 경우에 소송총괄부서장은 소송비용 회수의 실익을 판단하여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하여야 하며, 법원으로부터 소송비용액확정 결정문이 송달된 후 그 정본을 첨부하여 주무부서장이나 지역본부장에게 통보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주무부서장이나 지역본부장은 지체 없이 상대방에게 소송비용 납부 최고 등을 하여 소송비용을 회수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강제집행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소송비용을 회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. <개정 2018. 12. 31.>

1. 소요기간이나 경비 등에 비추어 회수할 금액이 경미한 경우
2. 상대방이 지급능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
3. 그 밖에 소송비용의 회수가 부적당한 것으로 인정되거나 회수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

③ 공사의 패소확정으로 소송상대방이 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하여 그 확정결정문이 공사로 송달되면 소송총괄부서장은 그 정본을 첨부하여 주무부서장이나 지역본부장에게 통보한다.

④ 제3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주무부서장이나 지역본부장은 소송상대방으로부터 소송비용의 청구가 들어오면 소송비용을 지급한다.

⑤ 소송총괄부서장의 소송수행결과 소송종결 등으로 담보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소송총괄부서장은 지체없이 법원에 담보취소결정신청을

하고, 담보취소결정이 확정되는 즉시 공탁금을 회수하여야 한다. <개정 2017. 12. 1.>

⑥ 소송발생부서 위임소송에 대해서는 소송발생부서장이 소송비용액확정 신청 및 담보취소결정 신청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. <개정 2018. 12. 31.>

제18조(강제집행 등) ① 소송발생부서장은 소송이 종결된 경우에는 그 판결의 내용에 따른 채권의 행사, 채무의 이행 및 강제집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, 소송과정에서 상대방으로부터 가압류·압류·가처분된 공사예금계좌 및 부동산 등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해제 조치하여야 한다. <개정 2018. 12. 31.>

② 소송총괄부서장이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주무부서장 또는 지역본부장으로 하여금 제1항의 조치를 이행하도록 한다.

③ 강제집행의 경우로서 채무자의 행방불명, 무자력 등으로 그 강제집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사건을 종결 처리한다. 다만, 채무자의 주소가 확인되거나 재산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다시 강제집행을 추진한다.

④ 제3항의 경우 장래에도 강제집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거나 소멸시효 완성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에 대하여 결손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
제5장 소송대리인 및 보조자

제19조(법률고문 등) ① 공사는 업무 전반에 관하여 법률상의 자문 및 소송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법률고문을 두며 지역본부에는 필요에 따라 자문변호사를 둘 수 있다.

② 법률고문은 사장이 위촉하며, 자문변호사는 지역본부장이 위촉한다.

제19조의2(법률고문 등의 운영 기준) ① 공사는 법률고문 등을 위촉·운영함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전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.

<2013. 9. 27. 신설>

제20조(소송대리인의 의무) ① 소송대리인은 위임의 내용에 따라 그 수임 사무를 신의에 좇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.

② 소송대리인은 업무상 알게 된 공사의 비밀을 정당한 이유 없이 누설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21조(소송수행 보조자) 소송발생부서의 담당 부장 및 그 직원은 해당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그 사건의 소송수행 보조자(이하 “보조자”라 한다)가 된다.

<개정 2017. 12. 1.>

제22조(보조자의 직무) ① 보조자는 소송총괄부서장 또는 소송대리인의 요구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소송수행에 필요한 각종 자료의 수집, 조사, 작성 및 제출
2. 변론기일 그 밖에 법원이 지정하는 기일예의 출석 및 입회

3. 하자소송의 경우 하자감정착수회의 참석 및 하자조사 입회 <신설 2017. 12. 1.>
 4. 사내전산망 소송관리부문에 수행 중인 소송자료의 입력 및 관리 <개정 2017. 12. 1.>
 5. 그 밖에 소송수행에 필요한 사항 <개정 2017. 12. 1.>
- ② 보조자가 소송대리인의 요구에 따라 제1항의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소송총괄부서장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.

제6장 소송심의위원회 <신설 2018. 12. 31.>

제23조(소송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)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으로서 소송총괄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소송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1. 제소 및 응소 방침 등 소송을 통한 분쟁해결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
2. 전사적인 소송 및 분쟁 현안으로서 신속한 해결이 요구되는 사항
3. 그 밖의 소송관련 업무 중 위원장이 경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24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장은 소송총괄부서장으로 한다.

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자 중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로 구성한다.

1. 주무부서장
2. 주무부서 담당부장

3. 지역본부(사업본부 포함) 담당 처장(사업단장 포함)
 4. 소송총괄부서 법무지원부장
 5. 소송총괄부서 송무1부장
 6. 소송총괄부서 송무2부장
 7. 사내변호사
 8. 그 밖에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는 관련부서 부장급 이상의 직원
 9. 심의안건이 중대하거나 심의에 전문성이 요구되는 경우 교수, 변호사, 공무원 등 3인 이내의 외부 위원
-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소송총괄부서의 송무담당 차장이 된다.

제25조(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,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.

-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소송총괄부서 송무1부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26조(심의요청) 심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 주무부서장은 관련서류 일체를 첨부하여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심의의안을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27조(회의)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.

- ②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의 목적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

-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각 회별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의결된 내용은 별지 제5호 서식

에 따라 의사록을 작성하고 심의의결서에 기입한 후 출석위원이 서명한다.

제28조(자료요청 및 조사)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부서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, 관계자의 의견청취 또는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.

제29조(심의결과 통보) ①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주무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주무부서장은 그 심의결과를 참조하여 신속한 분쟁 해결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③ 심의결과의 중요성, 파급효과 등을 감안하여 위원장은 주무부서장에게 경영심의회 등 중요사항 심의기구의 심의 절차 이행을 요청할 수 있다.

제30조(수당지급)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부칙<2009.10. 1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① 이 규정 시행 당시 진행 중인 한국토지공사 및 대한주택공사의 소송은 공사가 수행하는 것으로 본다.

② 이 규정 시행일 전에 소송위임계약이 체결된 사건의 변호사 보수는 해당 소송위임계약에 따르며, 종전의 사건 중 이 규정 시행일 이후 체결하는 상급심의 소송위임계약은 이 규정에 따를 수 있다.

부 칙<2013. 9. 27>

이 규정은 2013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<2017.12. 1 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7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 당시 이미 소송위임계약이 체결된 사건에 대해서는 개정 전 사규에 따른다.

부 칙<2018. 5. 15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8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별표1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전에 법원에 접수된 사건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이 규정 시행 이후 상소되는 사건에 대하여는 별표1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.

부 칙<2018. 12. 31. 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1월 9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 당시 이미 소송위임계약이 체결된 사건에 대해서는 개정 전 사규에 따른다.

[별표1] (제13조 관련) <개정 2018. 5. 15. , 2018. 12. 31.>

착수금 산정기준

소송물 가액	산정 기준	지급 기준액
1,000만원 이하	$[160\text{만원}] \times 1/2$	80만원
1,000만원 초과 ~ 5,000만원 이하	$[160\text{만원} + (\text{소송물가액} - 1,000\text{만원}) \times 7/100] \times 1/2$	80만원 ~ 220만원
5,000만원 초과 ~ 1억원 이하	$[440\text{만원} + (\text{소송물가액} - 5,000\text{만원}) \times 6/100] \times 1/2$	220만원 ~ 370만원
1억원 초과 ~ 15,000만원 이하	$[740\text{만원} + (\text{소송물가액} - 1\text{억원}) \times 4/100] \times 1/2$	370만원 ~ 470만원
15,000만원 초과 ~ 2억원 이하	$[940\text{만원} + (\text{소송물가액} - 1\text{억}5\text{천만원}) \times 2/100] \times 1/2$	470만원 ~ 520만원
2억원초과 ~ 5억원 이하	$[1,040\text{만원} + (\text{소송물가액} - 2\text{억원}) \times 1/100] \times 1/2$	520만원 ~ 670만원
5억원 초과	$[1,340\text{만원} + (\text{소송물가액} - 5\text{억원}) \times 0.5/100] \times 1/2$	670만원 ~
1천억원 초과 조세소송	$5\text{천만원} + [(\text{소송물가액} - 1\text{천억원}) \times 0.5/100 \times 1/10]$	5천만원 ~

[별지 제1호서식] (제4조 관련) <개정 2018. 12. 31.>

소 송 위 임 계 약 서

한국토지주택공사(이하 “의뢰인”이라 함)와 변호사 (이하 “소송대리인”이라 함)는
원고 피고 간의 사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소
송위임계약을 체결한다.

제1조 “의뢰인”은 “소송대리인”에게 위 사건의 제 심 소송대리를 위임하고 소송위임장을 교부
한다.

제2조 “의뢰인”은 “소송대리인”에게 위임사무 처리의 착수금으로 금 원(부가가치세
별도)을 지급한다.

제3조 “의뢰인”은 “소송대리인”에게 위임사무 처리상 필요한 인지대, 예납금(송달료, 법원의 납
부명령에 따른 검증료, 감정료), 기록등사료, 출장여비 등을 지급한다.

(인지대, 예납금 환급계좌: ○○은행, 계좌번호 기재, 예금주 : 한국토지주택공사)

제4조 위임사무가 전부 승소일 때에는 “의뢰인”은 “소송대리인”에게 금 원(부가
가치세 별도)의 승소보수금을 지급하며 일부 승소일 때 및 기타 그 외의 사항에 대하
여는 “의뢰인”의 소송업무규정을 따른다.

제5조 소송사건이 파기환송될 경우 환송심에 대한 별도의 위임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이 계약으로
갈음하며 환송심에 대한 착수금은 산정금액의 2분의 1을 지급한다.

제6조 “소송대리인”은 수임사항 중 소의 취하, 반소의 제기, 화해, 청구의 포기 및 인락, 상소권의
포기 등 중요한 소송행위를 할 때는 미리 “의뢰인”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제7조 “소송대리인”은 수임사건의 진행상황을 수시로 “의뢰인”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제8조 “소송대리인”은 수임사무를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처리하고 업무상 알게 된 “의뢰인”의
기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8조의2 소송대리인은 소송수행 목적으로 의뢰인이 제공한 개인정보에 대하여 『개인정보보호
법』에 의거하여 유출방지 등 보호의무가 있으며,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제반
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
제9조 “소송대리인”은 수임사건이 승소(일부승소 포함)로 확정되어 상대방으로부터 소송비용을
받아야 할 경우 즉시 관할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하고, 결정정본을 “의뢰인”에게
송부하도록 협조하여야 한다. 이에 대하여는 별도로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.

제10조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“의뢰인”과 “소송대리인”이 협의하여 결정한다.

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“의뢰인”과 “소송대리인”은 각 1통씩 보관한다.

20 년 월 일

(의뢰인) 한국토지주택공사

(인)

주 소

(소송대리인) 변 호 사

(인)

주 소

[별지 제2호서식] (제4조 관련)

(사건 번호)

소 송 위 임 장

당사자 { 원 고
피 고

위 당사자간의

청구사건에 대하여

에게 소송대리를 위임하고 아래 권한을 수여합니다.

(1) 일체의 소송행위 (2) 반소의 제기 및 응소 (3) 재판상 및 재판 외의 화해 (4) 소의 취하 (5) 상급심에 대한 상소제기 (6) 청구의 포기 및 인낙 (7) 복대리인의 선임 (8) 목적물의 수령 (9) 공탁물의 납부, 공탁물 및 이자의 반환청구와 수령 (10) 담보권 행사 최고신청, 담보취소신청, 동 신청에 대한 동의, 담보취소결정 정본의 수령 및 취소 결정에 대한 항고권 포기 등

위 소송을 위임 합니다.

20 년 월 일

위임인 한 국 토 지 주 택 공 사
사 장 ○ ○ ○ (인)
주 소 :

지역본부장이 위임하는 경우에는 위임인을 아래와 같이 표시한다.

위임인 한 국 토 지 주 택 공 사
사 장 ○ ○ ○
위 대리인 ○○지역본부장 ○○○

[별지 제3호서식] (제27조 관련) <신설 2018. 12. 31.>

소송심의위원회 소집통지서

수 신 :

“소송업무규정” 제26조에 따라 20 년 제○○회 소송심의위원회를
다음과 같이 개최하고자 합니다.

○ 일 시 : 20 . . :

○ 장 소 :

○ 의 안 :

붙 임 소송심의위원회 심의의안 1부. 끝.

년 월 일

간사

(인)

[별지 제4호서식] (제26조 관련) <신설 2018. 12. 31.>

소송심의위원회 부의안

의안번호	제 20 - 호
의결일자	20 년 월 일 (제 회)

제 목	
-----	--

제 출 자	○○○○ 처장
제 출 일 자	20 년 월 일

의 결 사 항

1. 제안요지
2. 제안사유
3. 주요골자
4. 참고사항

붙임 : 검토보고서, 참고자료 등

[별지 제5호서식] (제27조 관련) <신설 2018. 12. 31.>

20 년도 제 회 소송심의위원회 심 의 의 결 서

1. 의결주문

20 년도 제 회 소송심위원회 부의안을 다음과 같이 심의·의결함

2. 의결내용

3. 심의위원

구 분	직 위	성 명	서 명	비 고
위 원 장				
위 원				
위 원				
위 원				
위 원				
위 원				
위 원				

붙 임 : 소송심의위원회 의사록 1부. 끝.

간 사

[붙임]

소송심의위원회 의사록

(의안 제20 - 00호)

1. 일 시 :

2. 장 소 :

3. 건명 및 위원

○ 건 명 :

○ 위원장 :

위 원 :

간 사 :

4. 주요 심의내용

5. 의결결과

소송심의위원회 위원장